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71호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38호)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1. 폐지이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본역량심사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취지와 달리 신규기관의 민간위탁시장 참여를 막는 사전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동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근거 규정인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도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기본역량심사제도가 다음연도 민간위탁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도 기본역량심사 통과기관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심사효력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해당없음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전화 044-202-7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nabi7@korea.kr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를 폐지한다.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안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38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폐지한다

제2조(기본역량심사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종전의 고시에 따른 기본역량심사 효력의 유효기간은 2024. 12. 31.까지로 한다.